

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

의안 번호	9-87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13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「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」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,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참여기관 (민간컨소시엄)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

법적근거

- 「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
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9조

주요내용

- (목적)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내용과 범위 규정
- (사업의 내용과 범위)
 - 사업내용 : 상호문화도시 촉진 서비스 및 플랫폼도시 구축
 - 시행지역 : 안산시 원곡동, 원시동, 초지동, 사동 일원
 - 사업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7. 12. 31.까지
- (사업계획 및 실시계획)
 - 국토교통부와 안산시가 상호 협의한 사업내용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
 - 수립된 실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사업에 착수
 -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안산시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

○ (역할분담)

- 안산시 : 사업총괄, 정책수립, 공무원 전문직위 제도 운영, 예산지원, PMO, 감리, 스마트 캠퍼스 스튜디오 플랫폼 인프라(HW)구축, 스마트 네스트센터 구축 및 운영, 각 스마트 서비스별 운영 및 관리 지원
- (주)동해종합기술공사 : 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, 실시 설계, 상호 문화 도시 촉진 서비스 개발 및 구축
- 씨엠티정보통신(주) : 플랫폼도시 서비스 개발 및 구축, WSC전시 및 운영

○ (예산)

- 총사업비 160억원(국비 80억원 / 지방비 80억원)
- 사업비를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, 조건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안산시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

○ (기타)

- 성과물 관리 : 성과물의 특성 및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따라 귀속 주체 결정
- 솔루션의 구축 및 운영 : 솔루션 중 3종의 소스코드 공개, 수탁기관 사업비 지원은 2027. 12. 31.이후 가능
-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 : 광역데이터허브를 활용하고 성과물은 타 지자체 연계 공유
- 성과의 목표 달성 및 확산 : 주민 홍보 및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행사 및 회의에 적극 참여
- 중간평가 : 참여기관은 국토교통부 중간평가 시 안산시를 적극지원하고, 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교부금액 변경 시 참여기관의 보조금 규모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성과물의 운영 : 사업종료 이후 최소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·활용
- 결과 및 현황보고 :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안산시로 제출, 운영기간 내 전년도 성과를 1년단위로 안산시에 보고

- 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등 : 협약사업을 수행·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규 준수
- 협약의 운영 : 사업기간 완료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 효력 유지

비용추계서 : 【붙임 1】

협약서 : 【붙임 2】

방침결정문 : 【붙임 3】

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4】

협약(동의) 안전 점검표

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 비용추계서

(제3조제1항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비용 등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지원조건에 따른 국비:지방비 1:1매칭 ※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338(2025. 3. 17.)호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지원조건에 따른 국비:지방비 1:1매칭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	계	2025년	2026년	2027년	비 고
총 소요액		16,000,000	4,000,000	6,000,000	6,000,000	
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	국비	8,000,000	2,000,000	3,000,000	3,000,000	
	시비	8,000,000	2,000,000	3,000,000	3,000,000	

다. 재원조달방안: 2025년 제3회추경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시작으로 2026년 및 2027년 본예산 반영

- 국고보조금 80억(총사업비의 50%), 시비 80억(총사업비의 50%)

3. 작성자: 행정안전교육국 스마트도시과장 문승성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연도 (2025년)	2차연도 (2026년)	3차연도 (2027년)	계
세 입		2,000,000	3,000,000	3,000,000	8,000,000
국고보조금		2,000,000	3,000,000	3,000,000	8,000,000
세 출		4,000,000	6,000,000	6,000,000	16,000,000
민간자본사업보조		4,000,000	2,250,000	6,000,000	12,250,000
시설비(스마트네스트센터 및 스마트캠퍼스스튜디오)		-	3,100,000	-	3,100,000
감리, PMO		-	650,000	-	650,000
재원 조달		4,000,000	6,000,000	6,000,000	16,000,000
의존 재원	소 계	2,000,000	3,000,000	3,000,000	8,000,000
	보조금	2,000,000	3,000,000	3,000,000	8,000,000
	지방교부세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2,000,000	3,000,000	3,000,000	8,000,000
	지방세수입	2,000,000	3,000,000	3,000,000	8,000,000
	세외수입	-	-	-	-
지방채		-	-	-	-
기 금		-	-	-	-
공기업 특별회계		-	-	-	-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-	-	-	-

협약서

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

협약서

- 안산시 · 참여기관 -

안산시와 (주)동해종합기술공사, 씨엠티정보통신(주) (이하 “참여기관”이라 한다) 간의 「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- 제1조(목적)** ① 이 협약은 「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」(이하 “협약사업”이라 한다)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약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.
- ② 협약사업은 기후위기,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.

제2조(사업의 내용과 범위) ① 안산시와 참여기관의 협약사업은 「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」이며,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.

1. 상호문화도시 촉진 서비스 분야 : 첫사용법 안산(i-MaaS), 커넥티드 안산(자율주행셔틀), 글로에코 안산(임대아파트EMS), 웰컴헬스 안산(외국인헬스케어), K-익힘이 안산(AI코스웨어), 너나들이 안산(다국어 메뉴판)
 2. 플랫폼 도시 분야 : 명탐정 안산(포트홀탐지), RE-안산(탄소중립플랫폼), 활짝펴주는 안산(공유우산), AI에이전트 안산(전용에이전트), 스마트 컴퍼스 스튜디오(도시데이터플랫폼), 스마트 네스트센터(실증지원랩공간)
- ② 협약사업의 시행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, 원시동, 초지동,

상록구 사동 일원으로 한다.

③ 협약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이다.

④ ③항의 사업기간은 국토교통부 및 안산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연장 될 수 있다.

⑤ 참여기관은 제1조 제2항에 따른 협약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안산시와 협의하여 “국토교통부”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범위 또는 제2항의 지역범위 및 민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.

제3조(사업계획 및 실시계획) ① 참여기관은 국토교통부와 안산시가 상호 협의한 붙임 “사업계획”의 사업내용에 따라 “실시계획”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참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“실시계획”에 대해 안산시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사업에 착수한다.

③ 참여기관은 예산, 일정, 절차 등을 절감·단축하여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참여기관은 제3항 등의 사유와 같이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 할 경우 안산시와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(역할분담) 안산시와 참여기관은 ‘국토교통부·안산시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협약’ 및 붙임 ‘사업계획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안산시 : 사업총괄, 정책수립, 공무원 전문직위 제도 운영, 예산지원, PMO, 감리, 스마트 컴퍼스 스튜디오 플랫폼 인프라(HW)구축, 스마트 네스트센터 구축 및 운영, 각 스마트 서비스별 운영 및 관리 지원

2. (주)동해종합기술공사 : 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, 실시 설계, 첫사용법 안산 서비스 개발 및 구축, 커넥티드 안산 서비스 개발 및 구축, 글로에코 안산 서비스 개발 및 구축, 웰컴헬스 안산

서비스 개발 및 구축, K-익힘이 안산 서비스 개발 및 구축, 너나들이 안산 서비스 개발 및 구축, 명탐정 안산 서비스 개발 및 구축
3. 씨엠티정보통신(주) : RE-관리 안산 서비스 개발 및 구축, 활짝펴주는 안산 서비스 개발 및 구축, AI 에이전트 안산 서비스 개발 및 구축, 스마트 컴퍼스 스튜디오 플랫폼(SW)개발 및 구축, WSC전시 및 운영

제5조(예산) ① 협약사업의 총 사업비는 160억원(₩16,000,000,000, 부가가치세 포함)이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국 비 : 80억원(₩8,000,000,000)

2. 지방비 : 80억원(₩8,000,000,000)

② 안산시는 협약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른 연차별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지방비는 안산시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급한다.

④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 중 국비를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.

⑤ 참여기관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, 실시설계 비용, 기타경비 등 본 사업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
⑥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비를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, 조건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안산시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도 참여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⑦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정부예산의 변경, 사업비의 집행 저조,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산시는 보조금의 지급시기,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성과물 관리) ① 참여기관은 성과물의 특성 및 보조금 관련 제규정을 안산시와 검토하여 의무 운영기간 종료 전에 성과물의 귀속 주체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성과물이 참여기관에게 귀속되는 경우, 안산시는 별도의 운영 관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귀속 받은 자가 성실히 운영할 수

있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③ 성과물을 귀속 받은 참여기관은 성과의 전국 확산을 위해 안산시에서 성과물의 공유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민참여) 참여기관은 지역주민이 도시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한다.

제8조(솔루션의 구축 및 운영) ① 안산시는 협약사업의 서비스 및 솔루션이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, 안산시와 참여기관은 협약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참여기관은 협약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솔루션 중 3종의 소스코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 공개의 시기와 방식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안산시는 참여기관이 협약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규제 특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참여기관이 협약사업으로 구축한 솔루션은 원칙적으로 참여기관이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직, 인력 등이 부족하여 참여기관에서 운영·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산시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 수탁기관을 정하여 운영·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정하는 경우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없다.

⑥ 참여기관은 안전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하여 「스마트시티 플랫폼 보안가이드라인」(2024.5, 국가정보원)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) ① 참여기관은 데이터 기반의 도시 운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구축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활용하여야 하며, 관련 데이터 수집범위, 관리 및 활용방안 등을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실시계획 내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참여기관은 협약사업을 구성하는 솔루션은 사업 종료시까지

광역자치단체에 구축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와 연계하여야 한다.
③ 참여기관은 안산시가 전국 확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성과물의 타 지자체 연계·공유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성과목표 달성 및 확산)** ① 참여기관은 협약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까지 협약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참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,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행하여야 한다.
③ 참여기관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 및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월드 스마트 도시 엑스포, 성과 공유회 등 스마트도시 관련 행사 및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④ 안산시와 참여기관은 협약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한 서비스 및 솔루션이 주변 도시 등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중간평가)** ① 참여기관은 안산시가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 실적과 중간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.
1. 지원 범위 : 국토교통부의 중간평가에서의 주요 평가항목인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, 성과목표 달성도,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
 2. 지원 방법 : 문서, 영상, 이미지 등의 작성
- ② 국토교통부가 본 사업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안산시의 국비지원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안산시는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참여기관의 보조금 규모 변경을 할 수 있다.
③ 중간평가의 세부 평가방법, 내용 등은 안산시가 참여기관에게 통보한다.

- 제12조(성과물 운영)** ① 참여기관은 본 사업 수행 결과로 도출된 정보시스템, 소프트웨어, 시제품 등 주요 결과물을 선별하여 성과물 목록을 작성하여 안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참여기업은 협약사업으로 구축된 성과물이 사업종료 이후에도

최소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·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, 안산시의 유지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참여기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과물을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양도, 교환, 대여, 폐기, 매각, 담보의 제공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성과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, 운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, 양도 또는 대여 조건에는 해당 성과물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3조(결과 및 현황보고) ① 참여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안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결과 보고서·요약서
2. 성과물 목록(관리책임자 포함)
3. 사업성과 활용계획서(사업 완료 이후 운영방안 등을 포함)
4. 주변지역 확산방안
5. 자체평가 의견서

② 참여기관은 성과목표 달성, 성과의 주변지역 확산 등의 사업 현황을 협약의 효력이 끝나기 전까지 1년 단위(전년도 성과를 다음 연도 1월까지)로 안산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안산시는 협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진행상황 및 결과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4조(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등) ① 참여기관은 협약사업을 수행·관리함에 있어 「국가재정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」,

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「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」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안산시와 참여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고,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,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5조(협약의 운영) ①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협약은 협약사업의 사업기간 완료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③ 이 협약에 명시된 준수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기간에 따른다.

④ 안산시와 참여기관은 협약사업의 각 조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하며,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참여기관은 협약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사업기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안산시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협약사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처리는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.

⑦ 참여기관은 안산시로부터 사업 추진현황,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⑧ 안산시와 참여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협약사항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.

⑨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와 참여기관이 상호간 협의하여 정한다.

⑩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협약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⑪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안산시와 참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붙임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계획 1부.

2025년 11월 일



시 장 이 민 근



대 표 김 승 진



대 표 김 국 동